

보도시점 2023. 6. 12.(월) 조간
2023. 6. 11.(일) 12:00

배포 2023. 6. 9.(금) 16:00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담당 부서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책임자	팀 장	박정우 (044-202-3630)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044-202-3632)



- < 붙임 > 1. 부양가족연금 개요
2. 유족연금 개요

- < 별첨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부양가족연금 개요

-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액)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연금액 (2023년)
배우자	-	연 283,380원 (월 23,610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 (월 15,730원)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 (월 15,730원)

*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

- (적용대상 급여)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노령연금(부분연기연금 포함)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붙임 2

유족연금 개요

- (목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 (유족의 범위)

순위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1	배우자	-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연금액)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여 지급